

홈앤쇼핑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(안)

제정일 2017년 9월 28일

제1조(목적) 이 운영규정은 방송법 제 87조와 제 88조, 동법 시행령 제 64조와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홈앤쇼핑 시청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가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권한과 직무) ① 위원회는 권한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·답변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
 2. 자체심의 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
 3.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
- ② 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3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(주)홈앤쇼핑은 자체적으로 위원 모집에 대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위원회의 간사는 (주)홈앤쇼핑 업무분장에 따른다.

제4조(후보자 공모) ① 후보자 공모는 위원 위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.

- ② 후보자 공모는 (주)홈앤쇼핑 홈페이지 및 해당 추천단체 공문 발송 등을 통해 고지한다.
- ③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(지원서, 단체 추천서), 접수방법, 모집인원, 모집기간, 위촉절차, 위원 결격사유,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5조(후보자 추천 및 모집) ①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34조의 시청자위원 추천단체가 후보자를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.

- ②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.

1. 초·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
2. 소비자보호단체
3. 여성단체
4. 청소년관련 단체
5. 변호사단체
6. 언론관련 시민·학술단체
7.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
8. 노동단체
9. 경제단체
10. 문화단체
11. 과학기술 단체
12. 인권단체
13. 물류·유통 관련 단체

③ 위 제2항제2호 내지 10호의 규정의 의한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
2.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, 정관이 있을 것

④ 추천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 때에는 단체의 직인이 있는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.

⑤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전문성, 연령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, 추천분야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1.5배수 이상으로 한다.

⑥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전문성, 연령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, 추천분야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1.5배수 이상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 적격여부 심사 및 결격사유) ① 선정위원회는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.

②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.

1. 방송 사업에 종사하는 자
2.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(교육공무원, 법관 제외)
3. 정당법에 의한 당원
4.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
5. 타방송사 시청자위원

제7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위원은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선정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.

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선정위원회에서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이 10명 이상이고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.

③ 위원이 임기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방송사의 명예훼손,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업무를 주관하는 의장이 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시청자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에 해당할 때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2. 위원회 재적인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
3. (주)홈앤쇼핑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

④ 정기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소집하며 소집전에 안건과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.

⑤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⑥ 회의록은 (주)홈앤쇼핑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청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.

⑦ 시청자위원회 간사는 월간 운영실적을 다음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9조(수당)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게 자료 수집비 및 자문을 위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방식은 (주)홈앤쇼핑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2. (대의공표 및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위촉한 현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며, 차기위원회 구성 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